

case  
3

승용차

요약

사례명	<b>승용차</b>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02821 (2019.07.26.)
사실관계	중국에서 다국적산 부품들을 사용하여 제작된 주요 서브어셈블리 3개(차체 어셈블리, 엔진 모듈, 후륜 서스펜션 모듈)와 기타 중국산 부품 및 유럽산 부품을 스웨덴으로 수입한 후, 스웨덴에서 최종 조립 과정을 거쳐 승용차 생산
쟁점 및 판정	<b>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b> • 중국에서 복잡한 조립 공정을 통해 최종 용도가 사전에 결정된 핵심 서브어셈블리가 생산되며, 스웨덴에서 이를 다른 부품들과 조립하여 승용차를 만드는 공정은 비교적 단순하여 서브어셈블리의 용도를 변경시키지 못하므로 보다 복잡한 공정이 수행된 중국이 원산지임
근거법령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I 판정사례<sup>3)</sup>

**사 례 명** [승용차]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02821 (2019.07.26.)

**사실관계**

**요청자** Volvo Car U.S. Operations Inc.

**제품명** • passenger vehicles

**제품**

**구성**

구분	부품명(원산지)
하드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디사이드, 도어, 리어선반, 테일게이트(이탈리아산)</li> <li>• 사이드미러(영국산)</li> <li>• 헤드램프(슬로바키아산)</li> <li>• 사이드 마커등(프랑스산)</li> <li>• A패널, C패널, 파노라마 루프(중국산)</li> </ul>
엔진 모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휘발유 엔진, 서브프레임(스웨덴산)</li> <li>• 기어박스, 프론트 서스펜션(일본산)</li> <li>• 전륜 브레이크(미국산)</li> <li>• 라디에이터, 스티어링 시스템(중국산)</li> </ul>
후륜 서스펜션 모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륜 서브프레임, 후륜 전기모터(스웨덴산)</li> <li>• 후륜 서스펜션(일본산)</li> <li>• 후륜 브레이크(독일산)</li> </ul>
기타 주요 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드, 범퍼, 배터리 모듈, 온보드 충전기 및 인버터, 연료탱크 및 연료 필터 파이프, 배기 시스템, 호스 및 연료 라인, 언더바디 패널 및 히트 실드, 계기판, 터널 콘솔, 시트(중국산)</li> <li>• 고전압 케이블, 바퀴 (유럽산)</li> </ul>

**제조과정**



3)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상세공정

1. 중국에서 다국적산 부품들을 사용하여 주요 서버어셈블리 생산
  - (1) 차체 어셈블리 조립 및 도장
  - (2) 엔진 모듈 조립
  - (3) 후륜 서스펜션 모듈 조립
2. 중국산 서버어셈블리 및 기타 부품, 유럽산 일부 부품을 스웨덴으로 수입
  - 한 대의 차량 제작에 필요한 구성품들을 컨테이너 두 개에 포장하여 단일 선적물로 또는 생산 계획상 전체 차량 제작에 필요한 구성품들을 분리된 선적물로 운송
3. 스웨덴에서 최종 조립
4. 미국 수출

쟁점사항

-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현행 무역구제조치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 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분석이 적용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N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부품 또는 재료의 결합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결정적인 쟁점은 수행된 작업의 범위와 해당 부품들이 그 개별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물품의 필수 구성 요소가 되었는지 여부임

❖ 참고 판례: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573 F. Supp. 1149 (Ct. Int'l Trade 1983), *aff'd*, 741 F.2d 1368 (Fed. Cir. 1984)

## 관련 판례 및 분석

- 조립 작업이 단순하거나 최소한의 수준에 그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하지 않음

❖ 참고 판정: *C.S.D. 80-111, C.S.D. 85-25, C.S.D. 89-110, C.S.D. 89-118, C.S.D. 90-51, and C.S.D. 90-97*

- 제조 또는 결합 공정이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982), aff'd 702 F. 2d 1022 (Fed. Cir. 1983)*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circumstances)하여 사례별(case-by-case)로 이루어짐

- 각 구성 부품의 원산지, 해당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공 정도, 해당 가공이 해당 물품에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부여하는지 여부 등이 주요 고려 사항임

- 이 외에도 제품 설계 및 개발에 투입된 자원, 조립 이후의 검사 및 시험 절차의 범위와 성격, 제조 과정에서 요구되는 작업자의 숙련도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단일 요소는 결정적이지 않음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사례** 손전등 생산을 위한 약 50여 개의 원재료 중 백색 LED 및 Hydrogen Getter를 제외한 모든 원재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미국에서 조립

**판결** 수입된 구성 요소들이 완제품으로 조립된 후에도 개별 부품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수입 당시 이미 손전등 부품으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조립 과정에서 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

- 수입 후 가공이 단순한 조립에 그치는 경우, 물리적 변형(physical change)이 발생하지 않는 한 성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at 226, 542 F. Supp. at 1031,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제품의 최종 용도가 수입 시점에서 이미 사전 결정되어 있는 경우, 용도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310,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CBP는 해당 사안의 판정을 위해 다음의 사례들을 참고함

❖ 참고 판례: *CBP Ruling HQ H155115 (2011.05.24.)*

**사례** 전기차는 14개의 미국산 구성 요소를 포함한 총 31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종 제품의 조립은 미국에서 수행됨

**판정** 미국에서의 조립 공정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품과 노동력 모두에서 상당한 기여가 필요하며, 미국 내에서 수행된 공정으로 인해 부품들이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가진 전기차로 실질적으로 변형되었으므로 원산지를 미국으로 판정함

관련 법령  
및 분석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118435 (2010.10.13.)*

**사례** 골프 및 레저용 전기차는 약 53개에서 62개의 부품으로 구성되며 그 중 12개에서 17개는 미국산이고 새시, 플라스틱 차체 부품 등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하여 미국산 배터리 팩, 모터 등과 조립함

**판정** 수입 부품 모두가 다른 미국산 부품과 조립해야 전기차로 기능할 수 있고 핵심 부품인 배터리 팩, 모터, 전자장치, 배선 어셈블리, 충전기가 모두 미국산이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제조 공정으로 부품들에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으므로 원산지를 미국으로 판정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022169 (2008.05.02.)*

**사례** 인도에서 생산된 미니트럭 글라이더(엔진, 변속기, 구동축, 배기-연료 시스템 등 내연 기관 차량의 일반적인 핵심 구성 요소는 포함되지 않음)를 미국으로 수입한 후, 모터, 배터리 팩, 기타 전자 장치 등의 구성 요소를 추가하여 전기 미니트럭을 생산함. 해당 제품은 약 87개의 서로 다른 구성품으로 조립되며, 이 중 68개가 미국산이고 미국산 구성품이 총 비용의 51%를 차지함

**판정** 상당수의 주요 부품이 미국산이고, 미국에서의 조립 공정을 통해 수입 글라이더의 고유의 정체성이 상실되어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가진 전기 미니트럭이 생산되므로 원산지를 미국으로 판정함

판정 결과

☑ HQ H155115, HQ H118435, HQ H022169와 달리 중국에서 3개의 주요 서브어셈블리를 생산하는 공정은 스웨덴에서 수행된 공정보다 복잡하며, 스웨덴에서의 공정을 통해 사전에 정해진 용도가 변경되지도 않으므로 승용차의 원산지는 주요 서브어셈블리가 생산된 중국임

결론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승용차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함

II 시사점

- 여러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제품의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할 때, 보다 복잡한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가 어디 인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02821 (2019.07.26.), <https://rulings.cbp.gov/ruling/H302821>
- CBP Ruling HQ H155115 (2011.05.24.), <https://rulings.cbp.gov/ruling/H155115>

- CBP Ruling HQ H118435 (2010.10.13.), <https://rulings.cbp.gov/ruling/H118435>
- CBP Ruling HQ H022169 (2008.05.02.), <https://rulings.cbp.gov/ruling/H022169>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309750/belcrest-linens-v-united-states/>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